공고 제 65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19일

동탄1동장 인

화성시 동탄1 동장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규	이 *규 1988-01-11	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로 (석우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12-02